

광주지방법원 2021. 2. 5 선고 2020나52473(본소), 2020나52480(반소) 판결

[사해행위취소 · 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

담당변호사 장경진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진

변론 종결 2021. 1. 22.

판결 선고 2021. 2. 5.

제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. 1. 22. 선고 2019가단2085(본소),
2019가단54178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 :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와 C 사이에 2019.

2. 27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등기와 2019. 2. 27. 접수 제71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반소 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와 C 사이에 2019. 2. 26.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,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.

2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).

○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"원고는 2018. 11. 1. D에게 141,900,000원을 대여하였다"를

"원고는 H라는 상호로 장어양식업을 하고 있는 자인바, 2018. 3. 29.경부터 2019. 2. 7.경까지 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장어를 판매하였는데, 그 중 일부 대여금 및 장어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13 내지 15행의 "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, 3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"를 "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, 8호증, 을 제1, 3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각주 제2행의 "공시지가(272,747원)"를 "공시지가(290,287원)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"증인 C"을 "제1심 증인 C"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"이 법정에서"를 "제1심 법정에서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4 내지 5행의 "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"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 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,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일자의 기재가 있더라도 위 원인일자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와 다른 시기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(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86546 판결 등 참조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태, 판사 이지영, 판사 박옥희

별지

부 동 산 목 록

1. 목포시 F 전 455㎡

2. 목포시 F

[도로명주소] 목포시 I

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3.64㎡

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2.64㎡. 끝.

